

2022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1.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input type="radio"/> 기 간 : 2022. 7. 13. [수] 09:00 ~ 7. 20. [수] 18:00까지 <input type="radio"/> 방 법 : 홈페이지(http://exam.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input type="radio"/> 기 타 : 응시수수료(12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 1)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수 2)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input type="radio"/>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편의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input type="radio"/>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전형 (1)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제23821호>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input type="radio"/>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1) 「건축사법」 부칙<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에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에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2. 응시자격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input type="radio"/> 시험일자 : 2022. 9. 24. [토] <input type="radio"/> 시험장소 : 2022. 8. 31.(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4. 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합격기준	교 시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과목	대지 계획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배 점	100점	100점	100점					
	시 험 시 간	09:00 ~ 12:00 (3시간)	13:00 ~ 16:00 (3시간)	16:30 ~ 19:30 (3시간)					
	출 제 범 위	○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 평면설계	○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					
	답 안 지 작 성 방 법	○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5.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input type="radio"/> 합격예정자 발표 : 2022. 11. 11.(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input type="radio"/>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11. 16.(수) ~ 11. 18.(금) 18:00까지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input type="radio"/>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2. 28.(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input type="radio"/>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전자신분증 사용불가) 둘 다 지참 ※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input type="radio"/>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 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 1개 지급)								
6. 응시자 지 참 물	<input type="radio"/>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input type="radio"/> 응시 표 미지참자는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 마련된 응시 표 출력 장소에서 응시표를 재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radio"/> 답안지, 답안작성 트레이싱지(교시마다 1인당 2매) 및 깔판용지(1인당 1매)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개인이 준비한 용지,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을 일체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input type="radio"/>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 <input type="radio"/>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input type="radio"/> 일반계산기는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가능하니, 가급적 일반계산기 사용을 권장함. <input type="radio"/>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input type="radio"/>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input type="radi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의사항									

불 임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환불 안내

◎ 수수료 환불 근거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접수취소 시 수수료 환불

환불기간	환불요율	비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원서접수 기간 내 환불처리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환불	접수취소기간 종료 후 일괄 환불처리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 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접수취소 신청 매뉴얼 참조

◎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대상자 및 첨부서류

구분	사 유	환불 요율	첨부서류
1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100%	입원확인서 < 단,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수험자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해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격리 또는 감염확정 판정을 받은 수험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통지서
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5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경찰서 확인서 등

· 환불 신청기간 및 방법

-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testkira@naver.com)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 안내문 참조